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62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 : 윤호중 · 김영배 · 김영환

김종민 · 문진석 · 민형배

박정현 · 복기왕 · 소병훈

송재봉・양부남・용혜인

이광희 • 이수진 • 이학영

정준호・정태호・조승래

최기상 의원(19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자본지수는 167개국 중 107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위기 등의 문제 또한 당면현안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사회연대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기 완화에 기여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올해를 2012년에 이어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히 인정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 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연대경제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규모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반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추수하지 못해 법규정과 법현실의 괴리가 큼.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법과의 중복·충돌이 발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

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 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 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시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 라.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4호).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시 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 차.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 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5조).
- 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 파.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 하.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
 ·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의 사회연
 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금융 제도정비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 니.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 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회연대경 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20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함(안

제25조).

-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버.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정관과 규약,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31조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런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실현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 연합회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 국연합회
 - 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출자회사)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
-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

앙회

- 파.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 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 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 처기업
- 거. 제3호에서 정한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 너. 제18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 더. 그 밖에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 3.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4.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민간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힘써야 한다.
-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 여야 한다.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인권·환경·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 정제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여건, 전망
 - 2.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3.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 5.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6.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 · 관 협력 강화방안
 -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육성방안
 - 8.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 9. 사회연대경제 분야별 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 10.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의 통합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 11.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용방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12.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1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 14.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연대경제발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④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시·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 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 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 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장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 제13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2. 제2장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5.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6.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8. 사회적금융의 제도 정비 및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 9.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10.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1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다른 1인은 제3항제3호 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의 대표자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사회 연대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4. 국회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있고,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3호의 위원에 따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

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
 -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 2.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지원
 -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4. 사회연대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5.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 6.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 7.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교육, 컨설팅 및 홍보

- 8. 사회연대경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9.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한다.
- ⑦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경제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경제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관영, 민· 관공동운영, 민간 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민간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도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조직간 연합조직(이하 "연합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연합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③ 연합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 개발, 지역기반 확충, 인재육성 등에 대하여 제안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 ④ 연합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의 다양한 연합 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 산 축적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조직에 사회연대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연합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 제19조(사회적금융 제도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의 개발
 - 2. 사회적가치 측정ㆍ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 3.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 4.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 확대와 관련한 제도

- 5. 그 밖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 제20조(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정부는 사회연대경 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3.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

- 4.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 5.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6.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한 사업
- 7.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민간기금은 제20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 제25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 대경제조직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조 직생산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경제조직생상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

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26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 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 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 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해 국세 및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다.
 - 1.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아닌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역기금, 제24조에 따른 민간기금에 기부·출연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8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연대경제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문화강좌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세제상 지원을 할수 있다.
 -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 3.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 구축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 ·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3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운영

- 제31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 3. 회계장부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2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 ②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연대경제조 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 3. 사업결과 보고서
 - 4. 임원 현황
 - 5. 사회적가치보고서 등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 ③ 그 밖에 정보공시의 방법 및 횟수,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각 사회연대경 제조직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 제34조(벌칙)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①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